

의안번호	2126127
의 퇴 인	최춘식의원
회 답 일	2024.02.02
추 계 번호	23B5153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7억 8,200만원, 2029년 42억 9,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01억 6,400만원(연평균 40억 3,200만원)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산림재난자율감시단 (안 제46조의2)	3,782	3,903	4,028	4,157	4,290	20,164	4,032
국비(50%)	1,891	1,951	2,014	2,078	2,145	10,082	2,016
지방비(50%)	1,891	1,951	2,014	2,078	2,145	10,082	2,016

- 주. 1. 동 추가재정소요는 산사태 발생과 관련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설치·운영에 따른 것으로 향후 2024년에 수행할 산촌기초조사에 따른 '산촌'의 수 및 최저임금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 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4.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45조의16(산사태 발생지의 복구·복구명령 등)	- 산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은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복구·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2항) -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구·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에게 복구·복원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		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2	제46조의2(산림재난자율감시단)	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불,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5조의16 (산사태 발생지의 복구·복구명령 등) -산사태 복구복원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조치이행 관련 비용 지원		-	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법 제45조의16¹⁾에 따라 산사태 발생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므로 안 제45조의16제5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임
2	안 제46조의2 (산림재난자율감시단)	산사태	○	「산림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산촌 지역에서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산사태에 대하여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인건비를 산출
		산불	×	대형 산불 등 급작스런 재난은 돌발성이 있고 발생 시기가 불규하여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		산림병해충	-	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재난자율감시단으로 위촉된 자가 일상생활 시 산림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임

1) 법 제45조의16(산사태 발생지의 복구)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- 최저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⁾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: 산림재난자율감시단(안 제46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산불,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산림면적의 비율이 높고, 고령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가 높은 ‘산촌’ 지역에서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산사태에 대하여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운영할 경우³⁾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를 산출

※ [참고자료] 산촌의 정의 및 현황

- 「산림기본법 시행령」 4)에 의한 전국 ‘산촌’의 행정리 수 4,638개소⁵⁾에 여름철 강우 시 일일 2시간 동안 1명씩 채용하여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운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

(2023.11. 기준, 단위: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최저임금상승률	2.9	1.5	5.0	5.0	2.5	3.4	3.2	3.2	3.2	3.2

- 3) 산림청에 따르면 기운영중인 ‘산사태현장예방단’은 산사태 예방 및 인명·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지역 현장점검 및 호우기 응급조치 등을 위주로 실시 예정이며, 개정안에 따른 ‘산림재난자율감시단’은 산사태 발생시 노약자 등의 대피를 위해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치·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임
- 4) 「산림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(산촌) 「산림기본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·면을 말한다.
 1.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
 2. 인구밀도가 전국 읍·면의 평균 이하일 것
 3.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·면의 평균 이하일 것
- 5) 참고자료의 전국 ‘산촌’ 현황 참조

영하는 것으로 가정

- $4,638\text{개소} \times 1\text{인} \times 19,720(\text{최저임금}^6) \times 2\text{시간} \times 40\text{일}(\text{평년 7~9월 강우일수}) = 36\text{억 } 5,800\text{만원}(2024\text{년 기준})$

[표 2] 평균 강우일수 현황(1991~2020년)

(단위: 일)
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30년 평균 (1991~2020)	6.1	5.8	7.0	8.4	5.6	9.9	16.3	14.7	9.1	6.1	8.8	7.8

주.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(<https://data.kma.go.kr>) 자료

- 유사사례인 산림청의 산사태현장예방단⁷⁾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40~50%이므로 국고보조율은 50%로 가정
 - 추계기간인 5년 동안 행정리 수⁸⁾, 운영 기간(연중 40일), 운영 시간(일일 2시간), 채용 인원(개소당 1인)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최저임금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적용
-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향후 5년 동안 총 201억 6,400만원(연평균 40억 3,200만원)으로 산출

6) 2024년 기준 최저임금 9,860원

7) 산림재해일자리(2331-301)사업의 내역사업이며, 예산 현황은 2023년 5,530백만원, 2024년 5,647백만원

8) 산촌기초조사는 「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, 2024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임

[표 3] 산사태 관련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개소수(A, 개)	4,638	4,638	4,638	4,638	4,638	23,190	4,638
채용 인원(B, 명)	1	1	1	1	1	—	—
운영 기간(C, 일수)	40	40	40	40	40	—	—
일일 운영 시간(D, 시간)	2	2	2	2	2	—	—
인건비(E, 원)	10,195	10,521	10,858	11,205	11,564	—	—
합 계 (F=A×B×C×D×E, 백만원)	3,782	3,903	4,028	4,157	4,290	20,164	4,032
국비(50%)	1,891	1,951	2,014	2,078	2,145	10,082	2,016
지방비(50%)	1,891	1,951	2,014	2,078	2,145	10,082	2,016

주: 1. 동 추가재정소요는 산사태 발생과 관련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설치·운영에 따른 것으로 2024년도에 수행할 산촌기초조사에 따른 ‘산촌’의 수 및 최저임금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2.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□ (일부추계)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 37억 8,200만원, 2029년 42억 9,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01억 6,400만원(연평균 40억 3,200만원)이 상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산림재난자율감시단 (안 제46조의2)	3,782	3,903	4,028	4,157	4,290	20,164	4,032
국비(50%)	1,891	1,951	2,014	2,078	2,145	10,082	2,016
지방비(50%)	1,891	1,951	2,014	2,078	2,145	10,082	2,016

주: 1. 동 추가재정소요는 산사태 발생과 관련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설치·운영에 따른 것으로 2024년도에 수행할 산촌기초조사에 따른 ‘산촌’의 수 및 최저임금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4.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IV. 부대의견

- 산림재난 중 돌발성이 있고 발생 시기가 불규칙한 대형 산불은 추계가 곤란하여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, 2024년도에 수행할 산촌기초조사에 따른 ‘산촌’의 수 및 최저임금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지수현	이유미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3735	zisu37@nabo.go.kr

[참고자료] 산촌의 정의 및 현황⁹⁾

□ 「산림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‘산촌’

-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
- 인구밀도가 전국 읍·면의 평균(106명/km²) 이하일 것
-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·면의 평균(19.7%) 이하일 것

□ 전국 ‘산촌’ 현황

시·도	시·군	읍·면	행정리
계	109	466	4,638
대구	1	2	25
인천	1	3	13
울산	1	4	36
경기도	7	18	128
강원도	15	93	881
충청북도	9	43	528
충청남도	8	19	239
전라북도	10	46	404
전라남도	17	53	492
경상북도	23	114	1,253
경상남도	17	71	639

주. 산촌기초조사는 「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¹⁰⁾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실시함. 현재 수치는 2014년 조사 기준임

9) 산림청 산사태방지과

10) 「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산촌에 대한 조사)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.